

지방재정제도 운영 질의·회신

행정자치부 재정정책팀

1. 작업상 혼잡사유 수의계약 가능여부

〈질 의〉

전차공사(냉동·냉장시설 신축공사)와 금차공사(가공공장 건축공사)의 사업부지가 동일하고 건물 간 이격거리가 4m로 협소하며, 각 건물사이에 공사를 위한 비계 설치 등이 불가능함을 이유로 작업상 혼잡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신〉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사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4호 나목 및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자치부 예규 제204호) IV-3-가② 규정에 의거 금차공사가 시공과정상 다른 공사와 시간적·공간적으로 중복되는 공사로써 금차공사 기간 대비 전차공사의 잔여공사 기간 비율이 40%이상인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한 바,
-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단순히 동일부지 내라는 사유만으로는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담당자가 금차공사가 전차공사와 시공과정상 시간적·공간적으로 중복되는지 여부와 전차공사의 잔여공사 기간 비율이 40% 이상인지 여부등 사실 확인을 거쳐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

2. 입찰참가자격 제한 범위

〈질 의〉

지방자치단체 급수조례에 의거 급수공사 대행업자가 시행하는 급수공사가 일부 포함된 상하수도설비공사(급수공사 제외)를 발주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급수공사 대행업자만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사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합한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제한할 수 없을 것이나, 동 시행령 제20조 각호 규정에 의거 도급한도액, 시공능력, 공사실적, 기술의 보유상황,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재무상태 등으로 제한할 수 있는바,
- 질의하신 사항은 당해 조례에 규정된 급수공사가 일부 포함되었다는 사실 만으로 지방계약 법령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에는 당해 조례에서 정한 급수공사와 상하수도설비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3. 건축설계 용역비 산출기준

〈질 의〉

건축설계(현상공모)시 추정설계용역비를 명시하여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액으로 공고한 경우 설계공모 당선작에 대하여 엔지니어링 대가기준 또는 건축사용역 대가기준중 어느 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신〉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건축설계용역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 규정에 의거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설계경기에 의하여 발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축사법, 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건설교통부 고시) 등에 따라 건축사용역대가기준



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건설교통부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 귀 질의 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4호 차목 규정에 의거 관련 법령에 의하여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예산범위(추정가격 또는 예정가격) 이상으로 계약할 수는 없으며 건축설계경기 공고를 통하여 이미 설계용역비가 공고된 사항으로 공고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계약하여야 할 것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발주처가 계약의 목적·특성 등 구체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의 처리할 사항임

4. 학교급식 수의계약 가능여부 등

〈질 의〉

학교급식에 있어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한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공고계약 등을 생략하고 비공개적으로 학교에서 자체 결정할 수 있는지와 공고를 통하여 2곳 이상을 선정하여 비교견적 및 현장실사를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 1곳이 견적제출을 기피하는 경우 나머지 1곳과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및 변동단가를 적용하는 연간 단가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신〉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계약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8호 다목 규정에 의거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당해 법률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1인견적서 제출로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 질의하신 사항이 상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고계약 등을 통하지 않고 학교에서 자체 결정할 수 있을 것이며, 3천만원 이하 소액인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관할 시·도로 견적서 제출을 안내공고 하였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이거나 없는 경우 지정정보처리

장치에 의하지 않고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하는 것임. 또한, 학교급식물품 일지라도 연간 단가계약은 가능할 것이나, 변동단가 적용여부는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계약금액조정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가능할 것임.

5. 하자구분 곤란사유 수의계약 범위

〈질 의〉

취수장 및 취수관로와 강변여과수정수장설치공사를 하자구분 곤란의 사유로 수의계약을 할 경우 전차공사가 수직적 또는 수평적 구조물 등 구체적인 하자사유 범위 및 기술사항 평가시 전차공사는 하자관련 없는 모든 전차공사가 하자사유 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

〈회 신〉

-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자구분 곤란의 사유로 수의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4호 및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행자부 예규 제204호)의 규정에 의거 “금차공사가 전차공사와 그 수직적 기초를 공통으로 할 경우와 전차시공물의 일부를 해체 또는 변경하여 이에 접합시키는 경우로서 전차공사의 하자보수보증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 가능하며,
- 하자구분 곤란의 사유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 요령에 의거 기술사항의 공사규모를 평가할 경우 금차공사와 하자사유가 직접 연관된 부분의 전차계약금액 만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함

6. 위탁 또는 대행사업의 수의계약 범위

〈질 의〉

지방공기업법령에 의거 설립된 경영평가 전문기관인 한국자치경영평가원과 도 산하 보조기관 등에 대한 경영평가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8호아목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수의계약에 있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8호아목의 규정에 의거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당해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는 동시행령 제30조제1항단서 규정에 의거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바,
-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지방공기업 법령에서 자치경영평가원이 자치단체 해당사업(용역포함)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함

7. 용역손해보험료 원가계산 산출방법**<질 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용역계약에 있어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용역손해보험료를 원가에 반영할 경우 부가가치세 산출방법

<회 신>

- 지방계약법령의 적용 범위는 지방계약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계약법령이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하는 바,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 용역의 손해보험 가입 및 원가에 계상토록 의무화되어 원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자부 예규 제182호)의 규정에 의거 총원가에 용역손해보험료를 합한 후 부가가치세를 산출하여야 함

8. 맨홀보수공법의 특수한 기술 포함여부**<질 의>**

맨홀보수공법이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거 신기술로 지정된 경우 해당 공법과 관련된 공사

를 지방계약법령에 의거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공사로 보아 해당 공법공사의 기술 보유상황 또는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공사의 종류는 지방자치단체 제한경쟁운영요령(행자부 예규 제188호)〈별표1〉1.에 “터널이 수반되는 공사” 등 29개 공사를 규정하고 있고, 위 기준에 “맨홀보수공법공사”는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공사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맨홀보수공법공사”는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바, 해당 공법공사의 기술 보유상황 또는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음. 다만, 위 요령〈별표1〉1.호에 규정에 의거 “기타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공사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공사로 보아 해당 공법공사의 기술 보유상황 또는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9. 출연기관 등의 지방계약법령 적용여부

〈질 의〉

00관리공단에서 발주한 아파트 건설공사에 있어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금액조정을 할 경우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신〉

- 해당 공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 직접 적용되는 기관은 아님. 다만, 공단 자체 회계규정 및 계약문서 등에서 지방계약법령을 준용한다고 명시된 경우 준용 가능함



10. 시설공사의 사급자재를 특정지역 업체로 구입토록 요구가능 여부

〈질 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시설공사에 있어 산출내역서에 포함된 사급자재를 지역(시.군)에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하는 물품으로 구입토록 발주기관에서 요구할 수 있는 지 여부

〈회 신〉

□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계약에 있어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비목과 금액 등을 기재하여 계약상대자가 착공신고서 제출시까지 제출한 내역서를 말하며, 사급자재는 재료비 비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서 등에 기재된 바에 의거 당해 사업을 집행하면 될 것임.

- 이 경우 사급자재는 당해 사업의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한 재료로 목적 달성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당해 재료를 납품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설계도서(공중별목적물량내역서)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체 구매하는 것으로서 발주기관에서 특정 지역 업체에 구입토록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는 없는 것임

11. 물가변동에 의한 설계변경시 조정기준일의 의미 등

〈질 의〉

물가변동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조정기준일의 의미와 적용범위

〈회 신〉

□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에 의한 설계변경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동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품목 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함.

□ 이 경우 조정기준일은 위의 두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시점을 의미하며,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하여야 할 부분이 물가변동에 의한 설계변경 적용대상임

12. 공동도급 실적인정 범위

〈질 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실적으로 제한한 공사입찰에 있어 ①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실적이 없는 경우에 잔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합산실적이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실적에 해당된다면 입찰참가 가능 여부 ②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 실적외에 민간실적 인정 가능여부

〈회 신〉

□ 질의①에 대하여

-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실적으로 제한한 공사입찰에 있어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실적인정 방법은 지방자치단체 공동도급계약 운영요령(행자부 예규 제189호)의 규정에 의거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면허가 동일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모두의 것을 합산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바,
-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실적이 없는 경우도 잔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합산실적이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실적에 해당된다면 입찰참가 가능함.

□ 질의②에 대하여

- 실적제한 범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제한경쟁계약 운영요령(행자부 예규 제188호)의 규정에 의거 특정기관(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이 발주한 공사실적만 인정하고 다른 기관(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 등)발주공사, 민자 또는 민간발주공사, 해외공사실적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는 바, 공공기관 실적외 민간실적도 인정하여야 함

13. 시설공사 실적인정범위

〈질 의〉

A공사 진행중 B공사를 하자불분명의 사유로 수의계약을 하여 준공한 경우 A,B공사를 단일공사의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쟁입찰 계약에 있어 입찰참가자격으로 실적을 제한하는 경우 실적이란 지방자치단체 제한경쟁계약 운영요령(행자부 예규 제188호) I-1.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의거 1건의 공사 실적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규모(양)을 의미하는 바,
- 기능이 상호 연결되고 하자책임구분이 불분명한 동일구조물공사를 수 회에 걸쳐 동일인에게 분할 발주한 경우라면 전체공사실적을 1건 공사의 실적으로 인정 가능할 것임

14. 설계변경시 신규비목 단가적용 방법**<질 의>**

전기공사를 실시하던중 설계서상에 포함된 일부자재가 생산중단 되어 신규 제품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 및 설계변경시 신규비목의 단가적용 방법

<회 신>

-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 및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행자부 예규 제195호) 제19조,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계약 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15. 지방의원의 계약체결제한**<질 의>**

당 사는 유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중소기업체로 ○○지역의 학교 및 군부대 등에 급식용 우유를 공급하고 있으며, 당 사의 대표이사가 2006년 3월에 취임하였으나 사위가 5·31지방선거에서 ○○도 지방의원으로 당선되어 2007년부터 학교 및 군부대등에 우유급식을 위한 수의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된 바, 학교에 공급되는 급식우유는 교육부·농림부와와의 협의에 의하여 공시가격인 단가 270원에 납품하고 있어 이를 영리사업에 포함하여 계약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회 신〉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지방의회 의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6.1.1.부터 지방의회 의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귀 질의의 경우 경쟁입찰에 의한 계약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는 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기타 학예에 관한 사무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사무로 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광역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도)의 지방교육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군부대는 당해 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계약체결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공시가격으로 납품한다하여 비영리목적 계약으로 볼 수 없을 것임

16. 원가계산용역기관 자격요건

〈질 의〉

원가계산용역기관인 회계법인이 ①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자부 예규)에서 정한 학위소지자 등 구성인력을 미보유한 경우 용역기관이 될 수 있는지 ②단체(협회)에 가입을 안해도 원가계산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③용역을 수주할 경우에만 수당을 지급하는 수당제 인력이 상시고용인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신〉

-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계약에 있어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자격 요건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작성요령(행자부 예규 제182호) 6-1-1의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



사법에 의한 회계법인도 위 기준에서 정한 구성인력을 보유하여야 원가계산용역기관으로 인정 및 해당 용역을 수행 할 수 있는 것이며, 용역의 수행은 단체(협회)에 가입여부와는 무관함. 또한, 구성인력은 용역기관으로 인정하는 자격요건으로 수당제 인력유무와 관련없이 행정자치부 예규 제 182호에서 정한 인력은 충족해야 함

17. 내역입찰의 입찰유무호 여부

〈질 의〉

건물 신축공사에 대한 내역입찰 결과 입찰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각 항목별로 합산한 금액이 총계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입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신〉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내역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서상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또는 산출내역서의 각 항목(공종·경비·일반관리비·이윤·부가가치세 등)별로 합산한 금액이 총계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7호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무효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귀 질의의 경우 각 항목(각공종·경비·일반관리비·이윤·부가가치세 등)별 합계금액이 입찰금액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것임

18. 하도급 직불실적 인정범위

〈질 의〉

사업고시는 교육청에서 하고 SPC(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회사)가 사업시행사인 BTL 사업에 있어 사업시행사인 SPC에서 당사와 하도급 체결한 업체에 하도급 직불 합의를 하여 대가를 직접 지급한 경우 하도급 직불실적으로 인정가능 여부

〈회 신〉

-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의 적격심사에 있어 하도급 직불실적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행자부 예규 제183호) 〈별표6-1〉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 20억원이상 관급공사중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공사를 발주기관 및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대금을 직불키로 합의한 경우에 직불실적으로 인정되는 바,
- 질의사항과 같이 교육청에서 발주한 BTL 사업으로서 사업시행사인 SPC에서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 하도급 직불실적으로 인정 가능함

19. 건축물 설계용역의 원가계산방법

〈질 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건축물(체육센터 및 도서관)의 설계용역에 있어 관련 법령에 별도로 건축부문요율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원가계산시 요율적용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회 신〉

-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계약에 있어 원가계산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자부 예규 제182호)의 규정에 의거 관련 법령에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는 바,
- 질의사항과 같이 건축물 설계용역에 있어 관련법령에서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20. 하자불분명 사유의 수의계약 가능여부

〈질 의〉

2개사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1, 2차 공사를 완료하고 추가공사가 발생하여 해당 부분에 대하여 하자불분명의 사유로 수의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 공동수급체 1개사(1개사는 특별한 사유없이 참여하지 않는 경우)와 수의계약 가능여부

**〈회 신〉**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의 계약에 있어 하자불분명의 사유로 수의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4호가목의 규정에 해당되어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행자부 예규)에서 정한 기준으로 평가하여 평가요소를 충족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자격요건은 지방자치단체 공동도급운영요령(행자부 예규)의 규정에 의거 공동도급에 의하여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을 공동수급체 각각 충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라 함은 구성원을 2인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당해계약을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의미하는 바,
- 질의사항과 같이 전차공사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인 경우로서 그 전차 시공자와 하자불분명의 사유로 수의계약을 하고자 한다면, 기존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에만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은 경우 수의계약대상이 될 수 없음

21. 학술연구용역의 범위 및 수의계약 가능여부**〈질 의〉**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학술연구용역에 해당되어 수기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신〉

- 학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자부 예규 제182호) 4-4-1의 규정에 의거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의미하며,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행자부 예규 제204호)VI.의 규정에 의거 추정가격 3천만원 이하의 용역으로서 학문적 전문성 등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학술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경우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상대자를 선정할

수 있는 바,

- 질의사항과 같이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은 시설의 현대화 및 개선과 관련된 연구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으로 전문성 등이 요구되는 학술연구용역에 해당될 것이며, 이 경우 추정가격이 3천만원이하인 경우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견적을 제출받아 수의계약대상자 선정이 가능함

22. 하도급실적 인정여부

〈질 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시설공사에 있어 발주처의 승인을 받지 않고 준공한 하도급업체의 실적을 하도급 실적으로 인정가능 여부

〈회 신〉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시설공사에 있어 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절차 등에 의거 집행하여야 하는 바, 질의사항과 같이 하도급 사항을 발주기관의 승인 등을 받지 않고 준공한 실적은 발주자가 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그 지방자치단체가 실적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을 것임

23. 폐기물처리용역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 의〉

폐기물처리용역에 있어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거 폐기물 처리방법이 변경(매립방법→소각방법)된 경우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가능 여부 및 조정대상의 범위

〈회 신〉

-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용역계약의 설계변경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5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행자부 예규 제197호)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담당자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로서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 수행 또는 기술용역공정계획의 변경 등 과업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는 그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바,

- 질의사항과 같이 폐기물처리용역의 경우도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거 폐기물처리방법이 변경된 경우라면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이며, 이 경우 조정대상은 계약담당자가 긴급한 사유 등으로 우선용역을 이행토록 한 경우가 아니면 설계변경 후 이행할 부분만 조정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24. 입찰유무효 여부 및 계약해지 가능여부

〈질 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점상·노상적치물 철거 및 정비관리 용역을 발주하면서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업 허가업체는 경비업법령에 의거 타 업무를 겸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경비업자를 노점상철거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가능토록 공고하여 해당업체가 낙찰되어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계약의 해지등 가능 여부

〈회 신〉

-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 입찰참가자격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입찰참가가 가능한 것이며, 또한, 동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은 입찰무효에 해당됨.
- 한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1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행자부 예규 제197호)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바,
- 질의사항과 같이 경비업법령에 의거 경비업 허가를 받은 업체는 타 업무를 겸업할 수 없도

록 규정된 경우에 경비업자가 노점상철거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한 경우는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 해당될 것으로 계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 해당될 것인 바, 당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가 가능할 것임

25. 일부 품목의 납품지연시 지체상금부과 대상 여부

〈질 의〉

다종의 물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품목을 납품기한 내에 납품하고 나머지 품목은 납품기한 이후에 납품을 한 경우 납품기한 내에 납품한 품목을 지체상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 여부

〈회 신〉

□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 물품구매계약에 있어 지체상금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 제30조, 동법 시행규칙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행자부 예규 제193호)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 이 경우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당해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다만,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한 것에 한하는 것임.

□ 따라서 지체상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는 성질상 분할이 가능하고 기납부분을 검사의 절차를 통해 인수를 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며, 검사 및 인수 절차 등을 통하지 않고 일부 품목을 납품기한 내에 납품하였다하여 일부 품목을 지체상금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는 것임



26. 농공단지 입주업체(지사) 수의계약 가능여부

〈질 의〉

지방계약법령에서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농공단지에 지사(공장설립)를 설립하여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도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회 신〉

-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계약에 있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6호마목의 규정에 의거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재산 등을 매입 또는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새마을공장을 포함한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 위 규정은 농업생산기반 및 농어촌생활환경 등을 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농어촌생활환경개선을 위한 것으로 농공단지에 지사(공장)를 설립하여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도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의 범위에 해당되어 수의계약에 의거 집행 가능할 것임

27. 수의계약시 하자보증잔여기간 산정방법

〈질 의〉

하자불분명의 사유로 수의계약을 할 경우 금차공사가 진행중인 사업의 기술사항 평가시 전 차공사의 하자보증잔여기간 산정방법

〈회 신〉

-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자불분명의 사유로 수의계약을 집행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자부 예규 제204호)의 규정에 의거 공사규모비 및 하자보수보증기간에 대한 기술 사항 평가를 하는 경우 하자보수보증기간은 금차공사기간 대비 전차하자보증잔여기간을 대비 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전차공사가 수의계약 요청서 접수일 현재 진행중인 경우의 전차하자보 증잔여기간은 계약서에 명시한 하자보수보증기간(지방계약법시행규칙별표1의 하자보증기간) 으로 평가하면 될 것임

28. 건설업 등에 대한 제재조치의 해제범위

〈질 의〉

2006.8.15이전 공동도급계약 불이행 사유로 2006.8.15이전에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재 조치를 받았으나 처분 받은 자가 행정소송을 하여 법원에 계류중인 경우 8.15광복절 「건설업 등에 대한 제재조치의 해제범위」에 해당되는 지 여부

〈회 신〉

□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 계약에 있어 2006.8.15이전 공동도급계약 불이행 사유로 2006.8.15이전에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재조치를 받았으나 처분받은 자가 행정소송을 하여 법원에 계류중인 경우도 8.15광복절 「건설업 등에 대한 제재조치의 해제범위 공고」(2006. 8. 25)의 “받을 예정인 처분”에 해당될 것인 바, 건설업 등에 대한 제재조치의 해제 범위에 해당됨

29. 분할가능 공사의 인수부분 지체상금부과 대상 여부

〈질 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 방파제축조공사에 있어 분할가능한(오탉방지막, 투기장 등) 부분을 기성검사를 하여 발주기관에서 인수한 경우 지체상금 부과시 위 부분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 시설공사에 있어 지체상금에 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 및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행자부 예규 제195호)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 기성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하는 것인 바,
- 질의사항과 같이 오탁방지막 등을 기성검사 후 발주기관에서 인수하였고 인수한 부분이 분할 가능한 경우라면 지체상금 부과시 위 부분을 제외하고 부과하는 것 임

30.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범위**〈질 의〉**

부실감리의 사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업체가 부실벌점이 없는 경우에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능여부

〈회 신〉

-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계약에 있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작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는 동시행규칙 제76조제1항〔별표 2〕에서 규정한 바대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 동시행규칙〔별표 2〕에서는 부실감리의 경우 부실벌점이 20점이상인 경우에 1월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질의사항과 같이 해당업체가 부실벌점이 없는 경우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할 수 없는 것임